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490-33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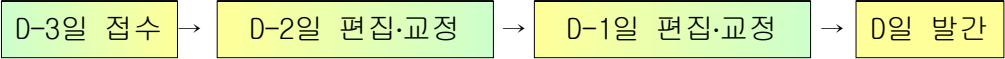
제1590호 2009. 11. 18.

**공 고**

제2009-901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2
제2009-902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3
제2009-903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4
제2009-904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5
제2009-907호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	7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490-3317 / FAX: 490-3640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공 고

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901호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하여 관련 조항 제37조에 따라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민원심의 신청,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
- 상위법명 명문화 (안 제1조)
-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안 제2조제1항, 제2항)
  -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 장기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
-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안 제4조)
- 민원심의 신청, 운영방법, 심의결과 이행 명문화 (안 제8조, 제9조, 제13조)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에 비치함(☎490-3472)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3조제①항제1호를 삭제한다.
- 제3조제①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 제3조제①항제3호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한다.
- 제6조제②항의 후단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한다.
- 제6조제②항제1호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7항”으로 하고 “제8조제11항”을 “제8조제12항”으로 한다.
- 제6조제②항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한다.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사담당관에 비치함(☎490-3470)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따라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건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코자 함.

#### 나. 주요내용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상위법령에 부합 되도록 삭제함.

###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에 비치함(☎490-3489)

2009년 11월 18일

## 중랑구청장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2009.12.31)이 도래됨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 나. 주요골자

1.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4조)
2.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이 없는 감면 폐지(안 제6조)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현행 제5조의2)
4. 농협중앙회 구관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비율 하향 조정(안 제11조)
5.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안 제12조, 제15조)
6.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폐지(현행 제17조)
7.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안 제19조)

8. 사치성 부동산 등(「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감면배제 일괄 규정  
(보칙 안 제25조)
9.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부칙 안 제2조)
10.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

Ⅱ.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1과에 비치함 (☎ 490-3345)

2009년 11월 18일

중 랑 구 청 장

## 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중랑구의회 제157회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I. 안 건 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 제정이유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시설 이용자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보훈회관의 운영협의회 (안 제5조)
  -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랑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함.
- 보훈회관의 관리·운영 (안 제6조)
  -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신청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함.
- 보훈회관의 협약체결 등 (안 제7조)
  -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도록 함.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함.
  - 위탁대상시설물 중 민간에게 사용 허가된 지상1층 소재 임대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보훈회관 위탁사무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둬.
  -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 및 보훈회관 재위탁 기관 선정을 심의·의결함.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함.

II.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비치함(☎490-3359)

2009년 11월 18일

중 랑 구 청 장